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13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6234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 주식회사
피 고	1. [redacted]시장
	2.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3. 15.
판 결 선 고	2016. 3.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과세처분 목록 기재 각 취득세·등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13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 리스 등 할부금융업무, 시설대여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수입 자동차 5대(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하고, 각 자동차를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사로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취득한 다음, 이 사건 각 자동차 판매사의 중개인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등록업무를 위임하였다.

순번	리스계약일	취득일	차량번호 및 차종	판매사	리스이용자
1	2007. 4. 6.	2007. 8. 6.	A [redacted]	B회사(C)	D
2	2007. 4. 18.	2007. 8. 13.	E [redacted]		F
3	2008. 1. 4.	2008. 3. 5.	G [redacted]	H회사 (I)	J
4	2007. 3. 8.	2007. 6. 12.	K [redacted]	B회사(C)	주식회사 [redacted]
5	2007. 9. 7.	2007. 11. 7.	L [redacted]	H회사 (I)	D

다.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작성한 원장 등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위임받은 중개인은 이 점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취득가격이 기재된 원고 법인 명의의 장부 등을 제출하고, 이 사건 제1, 2, 4, 5자동차의 과세표준을 각 9,090,909원으로, 이 사건 제3자동차의 과세표준을 10,000,000원으로 한 취·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이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13

라. 한편, [redacted]지방경찰청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가 신고, 납부될 때, 위조된 법인계정별원장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취득세·등록세가 과소하게 신고, 납부되었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하여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에서 기존 신고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다음,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별지 1 과세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가 제1 내지 4, 6 내지 8, 을나 제1 내지 4, 6 내지 1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의 과소신고·납부의 책임을 원고에게 돌려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가 과소하게 신고·납부된 것은 원고로부터 등록업무를 위임받은 중개인들이 원고의 법인장부,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보다 낮게 신고하고, 원고에게는 실제 취득가액이 기재된 취득세·등록세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였기 때문으로, 이와 같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소신고·납부에 관여하지 않은 원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13

② 원고로부터 등록업무를 위임받은 중개인들은 원고의 이행보조자가 아닌 피고들을 위한 행정업무의 보조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에 대한 감독책임을 원고에게 돌려서는 아니 된다.

③ 설령 이들을 원고의 이행보조자로 보더라도, 담당 공무원에게는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과소신고사실 및 관련 서류의 위조사실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거나 위 중개인들이 제출한 서류의 진실성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은 채 경솔하게 이를 믿고 과세처분을 한 임무해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담당 공무원의 임무해태로 인한 과소납부의 책임을 원고에게 묻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2)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은 원칙적으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를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지방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지방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의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13

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고, 따라서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조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되고(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510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관하여 납세의무자 본인의 인식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13

이러한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의 면제사유라고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존재에 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의 과소신고·납부행위를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원고에게 신고·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자동차 리스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해 온 회사로서, 자동차 등록절차, 취득세·등록세 납부절차 및 업계의 관행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등록업무를 대행한 중개인들이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납부영수증은 수기로 작성된 간이영수증으로 실제 납세고지서와 비교할 때 그 양식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납부명세란에도 '벤틀리 신규등록'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차량번호 내지 차대번호 등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없거나, 과세관청의 표시가 '[redacted]시장 파주시장'으로 중복하여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중개인들로부터 위와 같이 그 자체로 불완전하거나 모순되는 내용의 영수증만을 교부받고 이들이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대행한 중개인들은 원고의 의사 관여 아래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도록 하는 원고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중개인들의 과소신고·납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납세의무자의 대리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13

이나 이행보조자 등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관하여 납세의무자 본인의 인식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각 자동차의 과세표준의 과소신고사실 및 관련서류의 위조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담당 공무원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인정함에 어떠한 지장을 주는 사정이 아니다.

④ 취득세·등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8014 판결 등 참조), 담당공무원이 중개인들의 취득세·등록세 신고를 신고한 대로 수리하면서 위조된 서류임을 적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중개인들이 차량대금이 과소하게 기재된 법인장부 등을 제출하여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취득세·등록세를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담당 공무원이 원고에게 신고한 세액대로 취득세·등록세가 확정되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하였다거나 그에 관하여 어떠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원고에게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⑤ 또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에게 불성실 신고·납부에 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13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민석

판사 김유진

판사 박수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13

별지 1

과세처분 목록

순번	피고 처분청	처분일자	차량 번호	취득세(원)	등록세(원)
1	피고 [redacted]시장	2013. 11. 7.	A	1,297,940	3,244,870
2			E	1,295,490	3,238,740
3			G	7,369,860	18,424,680
4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3. 10. 28.	K	5,644,350	14,178,260
5			L	1,053,560	2,646,79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13

별지 2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4 (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끝.